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30조제2항 중 “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”를 “지원부서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자격, 구성 및”을 “구성,”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특정 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1.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, 학생 복지 등 관련 교직원
2.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
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

⑤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”을 “지원부서는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학의

장이 임명한다.

1. 교육학, 사회복지학, 법학 등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
2. 교육, 보건·의료, 사회복지 등 관련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
3. 장애학생 지원, 학생 복지 등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4.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개인별 수요 조사 및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 등)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장애의 종류 및 장애의 정도
2.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교육활동 편의
3. 제2호에 따른 교육활동 편의가 필요한 기간
4.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해당 대학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

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장애학생 소속 학과의 장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개인별 수요 조사 시기,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34조 및 제35조로 하고,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(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(이하 “고등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을 고등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
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
4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6. 그 밖에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

②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1. 고등교육센터 운영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
2. 고등교육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것

③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제33조 앞에 “제6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3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보칙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인별 수요 조사 및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적용례)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해당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특별지원위원회 구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4조(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신,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운영 등) ① (생 략)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, 장애학생 <u>지원부서</u>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<u>지원계획</u>을 수립하고,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지원부서는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</u>----- ----- -----.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. 1. <u>교육학, 사회복지학, 법학 등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</u> 2. <u>교육, 보건·의료, 사회복지 등 관련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</u> 3. <u>장애학생 지원, 학생 복지 등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</u> 4. <u>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</u>
<u><신 설></u>	<u>제31조의2(개인별 수요 조사 및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 등)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</u> 1. <u>장애의 종류 및 장애의 정도</u> 2. <u>법 제31조제1항 각 호 중 필요</u>

	<u>한 교육활동 편의</u> <u>3. 제2호에 따른 교육활동 편의가</u> <u>필요한 기간</u> <u>4.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</u> <u>위하여 해당 대학의 장이 필요로</u> <u>하는 사항</u> <u>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</u> <u>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</u> <u>영하여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,</u> <u>장애학생 소속 학과의 장과 해당</u> <u>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그 밖에 개인별 수요 조사 시</u> <u>기,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변경</u> <u>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</u> <u>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3조(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</u> <u>설치·지정 및 운영) ① 교육부장</u> <u>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</u> <u>인고등교육지원센터(이하 “고등교</u> <u>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 <u>는 기관이나 법인을 고등교육센터</u> <u>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</u> <u>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</u> <u>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</u> <u>해당하는 학교</u> <u>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</u> <u>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</u> <u>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</u>

	4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. 그 밖에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②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 1. 고등교육센터 운영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. 고등교육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것 ③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<u>제6장 보칙</u> <u><신 설></u> <u>제33조 · 제34조</u> (생 략)	<u><삭 제></u> <u>제6장 보칙</u> <u>제34조 · 제35조</u> (현행 제33조 및 제

	34조와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부 칙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개인별 수요 조사 및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적용례) 제3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.</u> <u>제3조(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해당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특별지원위원회 구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.</u> <u>제4조(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	
연 락 처	(044) 203 - 6380, 6379